

오사카부

**2017년도**

**부세안내**

**（大阪府広報担当副知事「もずやん」）**

한글판

**목 차**

**직업과 세금**

개인부민세・・・・・・・・・・・・・・・・・ 1

개인사업세・・・・・・・・・・・・・・・・・ 5

법인부민세・・・・・・・・・・・・・・・・・ 6

법인사업세・・・・・・・・・・・・・・・・・ 7

광구세・・・・・・・・・・・・・・・・・・・ 9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10

자동차취득세・・・・・・・・・・・・・・・・13

경유인취세・・・・・・・・・・・・・・・・・14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취득세・・・・・・・・・・・・・・・・15

오사카부의 고정자산세 ・・・・・・・・・・・17

**생활과 세금**

지방소비세・・・・・・・・・・・・・・・・・18

담배세(부세, 국세, 시정촌세) ・・・・・・・・19

골프장이용세・・・・・・・・・・・・・・・・20

수렵세・・・・・・・・・・・・・・・・・・・21

이자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이자할 ・・・・・・・・22

특정배당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배당할 ・・・・・・・・23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 ・・24

숙박세・・・・・・・・・・・・・・・・・・・25



직업과 세금

**개인부민세**

■**납세하실 분**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액이 과세되는 ‘균등할’과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이 있으며 매년 1월 1일의 상황에 따라 다음 분이 납부합니다.

|  |  |
| --- | --- |
| **납세하실 분** | **납세액** |
| 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 균등할액  소득할액 |
| 부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과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해당 시정촌에 주소가 없는 분 | 균등할액 |

단 다음 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  |  |
| --- | --- |
| **균등할 및 소득할이 비과세인 분** |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장애자, 미성년자, 편부모로 전년도 합계 소득금액이 125만엔 이하인 분(퇴직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의 소득할은 제외) |
| **균등할이 비과세인 분** |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각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분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 **소득할이 비과세인 분** |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35만엔 ×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친족수 합계) ＋ 32만엔］ 으로 구한 금액 이하인 분  　단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분은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35만엔 이하인 분 |

■**납세액**

**연액1,800엔**

**●균등할**

**※ 균등할의 세율 인상에 대하여**

주１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임시조치로서 균등할 세율(연간 1,000엔)에 500엔을 가산합니다. 인상분의 세수는 ‘방재대책’ 비용에 충당합니다.

주２　새로운 삼림보전활동을 긴급히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 균등할 세액에 300엔을 가산합니다.

**●소득할**　　개인부민세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할액**

**세액공제액**

**조절공제액**

**세율**

**(전년도 소득금액－소득공제액)**

－

－

＝

×

**과세소득금액**

**●세율**４％

2017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2018년도 이후의 개인주민세에서 지정도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의 소득할 세율이 개인부민세는 2%(현행 4%), 개인시민세는 8%(현행 6%)가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 등에 대한 세 비율,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비율에 대해서도 개인부민세(2%)와 개인시민세(8%)의 비율로 조정됩니다.

**※소득할의 세율 개정에 대하여(2018년도분 이후의 개인주민세부터)**

**●조절공제액**

|  |  |
| --- | --- |
| **합계 과세소득금액** | **공 제 액** |
| 200만엔 이하 |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주1) ’ 과 ‘합계 과세소득금액(주2)’ 중 적은 금액의 2% |
| 200만엔 초과 |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합계 과세소득금액－200만엔)｝의 ２％  단 이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는 1,000엔 |

(주1)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이란 소득세의 인적공제액(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 등 사람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과 주민세의 인적공제액과의 차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주2) 합계 과세소득금액이란 과세 총소득금액, 과세 퇴직소득금액 및 과세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과세공제액**

|  |  |
| --- | --- |
| **공제의 종류** | **공 제 액** |
| 배당공제 | 주식배당 등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 외국세액공제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그 나라의 소득세나 주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과세된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  (주택론 공제) | 〔소득세의 주택론 공제가능금액 중 소득세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못한 금액〕과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금액, 과세 퇴직소득금액 및 과세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에 5%를 곱한 금액(최고97,500엔※)〕 중 적은 금액(＝주민세 주택론 공제액) 중 부민세는 5분의 2가 공제되며 시정촌민세는 5분의 3이 공제됩니다.  ※2014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주하신 분 중 소비세율8% 또는 10%로 구입하신 분은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금액의 7%를 곱한 액(최고 136,500엔)  ○대상자  ・2009년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입주하여 소득세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분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입주하여 소득세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분  ※2007년 또는 2008년에 입주하신 분은 주민세의 주택론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기부금 공제 | 다음의 (1)과 (2)의 합계액이 공제됩니다.  (1) 기본공제액(주１)  부민세는 (부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주１)－2,000엔)×4％(주2)  시정촌민세는 (시정촌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주１)－2,000엔)×6％(주2)  (주1)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 한도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입니다.  (주2) 지정도시에 주소가 있는 분에 대한 2018년도분 이후의 공제율은 부민세2%, 시민세 8%로 개정됩니다.  (2) 특례공제액(주３)  부민세는 (도도부현, 시정촌에 대한 기부금－2,000엔)×(90％－소득세의 한계세율×1.021(주４))  ＝특례공제액의 5분의 2  시정촌민세는 (도도부현, 시정촌에 대한 기부금－2,000엔)×(90％－소득세의 한계세율×1.021(주４))  ＝특례공제액의 5분의 3  (주3) 도도부현, 시정촌에 대한 기부금(후루사토 납세)에만 적용되며, 부민세, 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의 20%가 상한입니다.  (주4) 2014년부터 2038년도까지 복구특별소득세에 상당하는 비율을 감면하는 조절을 합니다. |

**●소득공제액**

|  |  |  |  |  |
| --- | --- | --- | --- | --- |
| **공제의 종류** | | **부민세・시정촌민세(2017년도분＝2016년 소득)** | | **비고** |
| **①** | **잡손공제** | ＝A  보험금 등의  보전액  ―  손실액 | 다음의 (1), (2) 중 많은 쪽의 금액  (1)　A의 금액―(총소득금액 등 × 1/10)  (2)　A의 금액 중 재해관련 지출금액―５만엔 |  |
| **②** | **의료비공제** | 지불한 의료비의 금액  보험금 등의  보전액  중 적은쪽의 금액  ＞  총소득금액 등  ×５％    ―  ―＜    10만엔  (한도액　200만엔) | | '보험금 등의 보전액' 에는 건강보험, 공제조합 등의 급부금이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계약으로 보전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
| **③** | **사회보험료공제** | 지불한 사회보험료 합계액 | |  |
| **④** |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 지불한 소규모 기업공제 부금(구 제2종 공제부금 제외), 기업형 확정거출연금 부금,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 부금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심신장애자 부양공제제도 부금의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생명보험료공제** |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  ＋  일반 생명보험료분  (Ａ구 계약분＋Ｂ신 계약분)  Ｃ개호 의료보험분  ＋  개인연금보험분  (Ｄ구 계약분＋Ｅ신 계약분)  (합계 한도액 70,000엔)   |  |  |  |  | | --- | --- | --- | --- | | 구분 | | 지불 보험료액 | 공제액 | | 구 계약 | Ａ 일반생명보험  Ｄ 개인연금보험 | 15,000엔 이하 | 지불액 전액 | | 15,001엔∼40,000엔 | 지불액×1/2＋7,500엔 | | 40,001엔∼70,000엔 | 지불액×1/4＋17,500엔 | | 70,001엔 이상 | 35,000엔 | | 신 계약 | Ｂ 일반생명보험  Ｃ 개호의료보험  Ｅ 개인연금보험 | 12,000엔 이하 | 지불액 전액 | | 12,001엔∼32,000엔 | 지불액×1/2＋6,000엔 | | 32,001엔∼56,000엔 | 지불액×1/4＋14,000엔 | | 56,001엔 이상 | 28,000엔 | | 지불 보험료 ＝  보험료 금액 － 잉여금 등  구 계약：2011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약  신 계약：2012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  같은 계약내용에 구 계약과 신 계약 양쪽의 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왼쪽의 계산식에 따라 구 계약과 신 계약별로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합니다. 이 경우 한도액은 28,000엔입니다. 단 구 계약만으로 계산한 공제액이 합계한 공제액보다 큰 경우는 구 계약만으로 계산한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⑥** | **지진보험료공제** |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합계 한도액 25,000엔)  ＋  Ｂ구 장기손해보험계약 등 분  Ａ지진보험계약분   |  |  |  | | --- | --- | --- | | 구분 | 지불보험료액 | 공제액 | | Ａ 지진보험 | 50,000엔 이하 | 지불액×1/2 | | 50,001엔 이상 | 25,000엔 | | Ｂ 구 장기손해보험 | 5,000엔 이하 | 지불액 전액 | | 5,001엔∼15,000엔 | 지불액×1/2＋2,500엔 | | 15,001엔 이상 | 10,000엔 | | 구 장기손해보험료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만기반환금이 있는 10년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하나의 손해보험계약 등이 지진보험 계약과 구 장기 손해보험 계약 양쪽의 계약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계약 구분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 **⑦** | **장애인공제** | 한 사람당 260,000엔(특별장애자는 300,000엔, 특별장애자가 동거하는 부양친족인 경우는 530,000엔) |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양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16세 미만의 부양친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 **⑧ 편부모공제** | | 260,000엔(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부에 대해서는 300,000엔) | 일정한 요건이란 합계 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부양친족인 자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⑨** | **근로학생공제** | 260,000엔 | 합계 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로, 자기의 노동과 관련없는 소득금액이 10만엔 이하인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
| **⑩** | **배우자공제** | 330,000엔(연령 70세 이상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80,000엔) |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
| **⑪** | **배우자특별공제** | |  |  | | --- | --- | | 배우자의 합계 소득금액 | 공제액 | | 380,001엔부터449,999엔까지 | 330,000엔 | | 450,000엔부터499,999엔까지 | 310,000엔 | | 500,000엔부터549,999엔까지 | 260,000엔 | | 550,000엔부터599,999엔까지 | 210,000엔 | | 600,000엔부터649,999엔까지 | 160,000엔 | | 650,000엔부터699,999엔까지 | 110,000엔 | | 700,000엔부터749,999엔까지 | 60,000엔 | | 750,000엔부터759,999엔까지 | 30,000엔 | | 760,000엔이상 | 0엔 |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중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１다른 납세자의 부양친족인 배우자  ２청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전종자 급여를 받는 분 또는 백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３배우자 자신이 이 공제를 받는 경우 그의 배우자 |
| **⑫** | **부양공제** | 다음 구분에 다른 공제액   |  |  |  | | --- | --- | --- | | 구분 | 공제액 | 해당자 | | 일반 | 33만엔 | 16세 이상으로 하기 이외의 분 | | 특정 | 45만엔 |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분 | | 노인 | 38만엔 | 70세 이상인 분 | | 동거 노친 등 | 45만엔 | 노인부양친족 중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등 | | ・부양친족이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16세 미만의 부양친족에 대해서는 부양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⑬** | **기초공제** | 330,000엔 |  |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에서 제외됩니다.

　　１　합계 소득금액이 38만엔이 넘는 분

　　２　청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분으로 전종자 급여를 받는 분 또는 백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분

■**납세 방법**

**●신고**

부내 시정촌 내에 주소가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3월 15일 까지는 주소지의 시정촌에 신고서(시정촌민세와 같은 용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나 급여소득만인 분은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이나 특정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다른 과세방식을 선택하신 경우는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시정촌민세, 부민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

시정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일반적으로 6월, 8월, 10월, 1월)로 나누어 시정촌민세를 납부합니다.

※　각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납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급여소득자는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특별징수(주)됩니다.

**※개인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하여**

개인주민세(개인 도부현민세와 개인 시정촌민세를 합한 지방세를 말합니다.)의 특별징수란 사업주(급여 지불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이 매월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의 개인주민세를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인 종업원을 대신하여 종업원이 거주하는 시정촌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급여 지불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특별징수의무자로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주민세를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 321조 4)

**개인 주민세(개인 부민세, 개인 시정촌민세)의 Q&A**

**Ｑ：개인 주민세의** **‘특별징수’란 무엇인가요?**

Ａ：사업자가 종업원 대신 매월 지불하는 급여에서 개인주민세액(시정촌민세+부민세)를 공제하여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이 거주하는 시정촌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Ｑ：부와 부내 시정촌에서는 2018년도부터 특별징수를 철저히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징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무엇이 바뀌나요?**

Ａ：지방세법에 각 시정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를 개인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특별징수를 하여야 했지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특별징수의 구체적인 수속에 관해서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시정촌의 개인주민세 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세**

■**납세하실 분**

|  |  |  |  |  |  |
| --- | --- | --- | --- | --- | --- |
| **제2종 사업(3업종)** | | | | | |
| 축산업 | | 수산업 | | 신탄제조업 | |
| **제3종 사업(30업종)** | | | | | |
| 의료업 | 치과의료업 | | 약제사업 | | 수의업 |
| 변호사업 | 사법서사업 | | 행정서사업 | | 공증인업 |
| 변리사업 | 세리사업 | | 공인회계사업 | | 계리사업 |
| 사회보험노무사업 | 컨설턴트업 | | 설계감독자업 | | 부동산감정업 |
| 디자인업 | 각종 기예사업 | | 이용업 | | 미용업 |
| 클리닝업 | 공중목욕탕업(센토) | | 치과위생사업 | | 치과기공사업 |
| 측량사업 | 토지가옥조사사업 | | 해사대리사업 | | 인쇄제판업 |
|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침,  유도접골 그외 의료업과 유사한 사업 | | | 장제사업 | |  |

부내에 사업소, 사무소를 설치하여 법률로 정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사업을 하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  |  |  |  |
| --- | --- | --- | --- |
| **제1종 사업(37업종)** | | | |
| 물품판매업 | 보험업 | 금전임대업 | 물품임대업 |
| 부동산임대업 | 제조업 | 전기공급업 | 토석채취업 |
| 전기통신사업(방송사업 포함) | | 운송업 | 운송취급업 |
| 선박정계장업 | 창고업 | 주차장업 | 청부업 |
| 인쇄업 | 출판업 | 사진업 | 좌석대여업 |
| 여관업 | 요리점업 | 음식점업 | 주선업 |
| 대리업 | 중개업 | 도매업 | 환전업 |
| 공중목욕탕업(제3종사업 이외의 것) | | 연극흥행업 | 유기장업 |
| 유람소업 | 상품거래업 | 부동산매매업 | 광고업 |
| 흥신소업 | 안내업 | 관혼상제업 |  |

■**납세액**

**전년의 소득금액―사업주 공제**

**세액**

＝

×

**세율**

**●사업주 공제액**290만엔

단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제1종 사업 …５％

제2종 사업 …４％

제3종 사업 …５％

단 제3종 사업 중 안마 등 의료업과 유사한 사업 및 장제사업은 3%입니다.

※　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상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계산과 같습니다.

※　청색사업전종자 급여액 또는 사업전종자 공제액도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　소득세의 청색신고 특별공제액은 개인사업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 방법**

**●신고**

3월 15일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분은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소득세의 확정신고서 또는 개인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2.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290만엔(사업주 공제액) 이하인 분

**●납세**

납기는 원칙적으로 8월, 11월의 연 2회입니다. 8월에 부세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연세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는 8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11월에 납부할 납부서는 8월에 함께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달에 납세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는 납세통지서에 기입된 납기까지 납부합니다.

**법인부민세**

■**납세하실 분**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있으면 다음 법인이 납부합니다.

|  |  |
| --- | --- |
| **납세의무자** | **납세액** |
|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 | 균등할액  법인세할액 |
| 공익법인 등(상공회의소 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청년단, PTA, 현인회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을 포함 |
|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곳 | 균등할액 |
|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공익법인(일본방송협회, 일본하수도사업단 등) |
| 부내에 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으로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곳 |

■**납세액**

**●균등할**

자본금 등의 금액(주1)에 따라 5단계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로 계산합니다.

|  |  |
| --- | --- |
| **법인의자본금 등의 금액의 구분** | **세율** |
| 공익법인 등이나 1,000만엔 이하인 법인 등 | ２만엔 |
| 1,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법인 | 7.5만엔 |
| １억엔 초과 10억엔 이하의 법인 | 26만엔 |
|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의 법인 | 108만엔 |
| 50억엔 초과 법인 | 160만엔 |

(주1) 자본금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법인세할**

**법인세할액**

**법인세액×세율**

＝

**●세율**4.2％

단 사업년도말의 자본금의 금액이 1억엔 이하의 법인으로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총액이 연 2,000만엔 이하의 법인은 3.2%.

（注２） 平成26年９月30日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分においては、６％となります。

（注３） 平成26年９月30日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分においては、５％となります。

（注２） 平成26年９月30日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分においては、６％となります。

（注３） 平成26年９月30日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分においては、５％となります。

**법인부민세(균등할)의 초과과세에 대하여**

오사카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새로운 산업 진흥 등 오사카의 성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인부민세(균등할)에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민세(법인세할),법인사업세의 초과과세에 대하여**

오사카부에서는 도로망과 공공교통 등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기반정비의 재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인의 세부담을 고려한 후 법인부민세(법인세할) 및 법인사업세에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大阪府では、がんばる中小企業を支えるためのセーフティネットの確保、大阪経済の成長に向けた新たな産業の振興など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法人府民税（均等割）について超過課税を実施しています。

法人府民税（均等割）の超過課税について

■**납세 방법**

다음 기한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
| --- | --- |
| **신고의 종류** | **신고와 납세기한** |
| １　중간신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여 법인세의 중간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 ２　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사업세**

**■납세하실 분**

부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법인이 납부합니다.

단 공익법인 등(상공회의소 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청년단, PTA, 현인회 등)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납세액**

○소득을 과세의 기초로 하는 법인

**세액**

**소득　×　세율**

＝

○전기, 가스공급업, 보험업을 하는 법인

**세액**

**수입금액　×　세율**

＝

○부가가치액(주1), 자본금 등의 금액(주2) 및 소득을 과세의 기초로 하는 법인(외형표준과세)

**부가가치액×세율**

**소득×세율**

**세액**

**자본금 등의 금액×세율**

＝

＋

＋

(주1) 부가가치액이란 수익배분액(보수급여액＋순지불이자＋순지불 임대료)에 단년도 손익을 더한 것입니다.

(주2) 자본금 등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6호에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동조 제17호의 2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2015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자본금 등의 금액 (전술한 금액에서 무상증감자액을 가감한 금액)' 과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을 합한 금액 또는 출자금' 중 높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순자산액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2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법인의 종류 | 소득 등의 구분 | | | 세율(％) | | | |
|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까지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
| 초과세율 | 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 세율(주4)/표준과세 | 초과세율 | 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 세율(주4)/표준과세 |
| 소득금액  과세법인 | 보통법인  (주1)  공익법인 등 인격이 없는 사단 등 | 소득할 | 경감세율  적용법인 | 연400만엔 이하의 소득 | **3.65** | **3.4** | 3.65 | 3.4 |
| 연400만엔 초과  연800만엔 이하의 소득 | **5.465** | **5.1** | 5.465 | 5.1 |
| 연800만엔 초과 소득 | **7.18** | **6.7** | 7.18 | 6.7 |
| 경감세율 부적용법인(주3) | |
| 특별법인  (주1) | 소득할 | 경감세율  적용법인 | 연400만엔 이하의 소득 | **3.65** | **3.4** | 3.65 | 3.4 |
| 연400만엔 초과 소득 | **4.93** | **4.6** | 4.93 | 4.6 |
| 경감세율 부적용법인(주3) | |
| 수입금액  과세법인 | 전기가스공급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법인 | 수입할 | 수입금액 | | **0.965** | **0.9** | 0.965 | 0.9 |
| 외형표준과세  적용법인(주2) | | 소득할 | 경감세율  적용법인 | 연400만엔 이하의 소득 | **0.395** | **0.3(주５)** | 1.755 | 1.6(주５) |
| 연400만엔 초과  연800만엔 이하의 소득 | **0.635** | **0.5(주５)** | 2.53 | 2.3(주５) |
| 연800만엔 초과 소득 | **0.88** | **0.7(주５)** | 3.4 | 3.1(주５) |
| 경감세율 부적용법인(주3) | |
| 부가가치할 | | | **1.26** |  | 0.756 |  |
| 자본할 | | | **0.525** |  | 0.315 |  |

(주1) 특별법인이란 협동조합, 신용금고, 의료법인 등입니다. 보통법인이란 특별법인, 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 이외의 법인입니다.

(주2) 외형표준과세 적용법인이란 2004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각 사업년도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보통법인(법인간주 과세법인, 투자법인, 특정목적회사,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은 제외합니다.)이 영위하는 사업(수입금액과세되는 전기, 가스공급업 및 보험업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3) 경감과세 부적용법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으로 3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경감세율 적용법인이란 경감세율 부적용법인 이외의 법인입니다.

(주4) 불균일과세 적용법인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  |
| --- | --- |
| 소득금액과세법인 | 자본금이 1억엔 이하(특별법인, 공익법인 등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1억엔 이하로 취급한다)로 소득 총액이 연 5,000만엔 이하인 법인 |
| 수입금액과세법인 | 자본금이 1억엔 이하로 수입금액 총액이 연 4억엔 이하인 법인 |

(주5) 오사카부에서는 사업세의 적용은 없지만 지방법인특별세의 기준법인 소득할액의 계산에 이용됩니다.

■**납세방법**

법인부민세와 같은 기한(6페이지 참조)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광구세**

■**납세하실 분**

부내의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시굴권,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납부합니다.

■**납세액**

|  |  |  |
| --- | --- | --- |
| **구 분** | | **세 율** |
| ①사광(砂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구 | 시굴광구 | 면적 100아르 마다 연 200엔 |
| 채굴광구 | 면적 100아르 마다 연 400엔 |
| ②사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 | | 면적 100아르 마다 연 200엔 |
| ③석유 또는 가연성 천연가스를 목적으로 하는 광구 | | 상기 구분 ① 세율의 3분의 2 |

■**납세방법**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5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

■**납세하실 분**

자동차의 주소가 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 납부합니다.

자동차 매매시에 판매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할부판매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구입자를 소유자로 간주하여 구입자가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양도(이전등록)한 경우 해당 년도의 자동차세는 구 소유자에게, 다음년도부터는 신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그리고 경자동차 등은 경자동차세(시정촌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액**

●세액표【승용차】　　　　　　　（단위：엔）

|  |  |  |  |
| --- | --- | --- | --- |
| 종별 | | 세율(연세액) | |
| 영업용 | 자가용 |
| 총배기량 | １ℓ 이하 | 7,500 | 29,500 |
| １ℓ 초과 1.5ℓ 이하 | 8,500 | 34,500 |
| 1.5ℓ 초과　２ℓ 이하 | 9,500 | 39,500 |
| ２ℓ 초과 2.5ℓ 이하 | 13,800 | 45,000 |
| 2.5ℓ 초과　３ℓ 이하 | 15,700 | 51,000 |
| ３ℓ 초과 3.5ℓ 이하 | 17,900 | 58,000 |
| 3.5ℓ 초과　４ℓ 이하 | 20,500 | 66,500 |
| ４ℓ 초과 4.5ℓ 이하 | 23,600 | 76,500 |
| 4.5ℓ 초과　６ℓ 이하 | 27,200 | 88,000 |
| ６ℓ 초과 | 40,700 | 111,000 |

자동차의 종류, 용도, 총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한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과세 또는 감액됩니다.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

**등록월의 다음달부터 3월까지의 월수**

**12**

**연 세액**

×

**월할세액**

＝

（100엔 미만은 버림）

**●월할계산에 의한 환부**

　 연 세액에서 상기의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린화 세제**

200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환경부하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

다음 표와 같이 신차를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등록한 다음해의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경감된 해의 다음해 부터는 원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경감은 1년분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2016년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2017년도의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 | 2017년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2018년도의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 |
| 연비성능  배출가스성능 | | 2015년도 연비기준  + 20% 달성 | 2020년도 연비기준  + 10% 달성 | 2020년도 연비기준  + 10% 달성 | 2020년도 연비기준  + 30% 달성 |
| 2005년 배출가스 규제값보다 75% 이상 성능이 좋은 자동차 | 平成17年排出ガス基準75％低減レベルステッカー | 세율을 약  50% 경감 | 세율을 약  75% 경감※ | 세율을 약  50% 경감 | 세율을 약  75% 경감※ |
| 2018년 배출가스 규제값보다 50% 이상 성능이 좋은 자동차 |  |  |  |

※ 전기자동차, 일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 천연가스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일정한 배출가스 성능을 만족하는 클린디젤 승용차에 대해서는 신규등록한 다음해의 자동차세가 약 75% 경감됩니다.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

2016년도까지 신차 신규등록을 한 후 11년을 넘은 디젤자동차 및 13년을 넘은 가솔린자동차(LPG차 포함)의 자동차세율은 약 15%(일반승합용 이외의 버스 및 트럭은 10%)높아집니다.

|  |  |
| --- | --- |
| 대상자동차 | 초도 등록 |
| 디젤자동차 | 2006년 3월 31일 이전 |
| 가솔린・LPG차 | 2004년 3월 31일 이전 |

그리고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가솔린), 일반승합용 버스,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017년도 중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초도 등록에 대해서는 차검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납세 방법**

**●신고**

자동차를 새로 소유하게 되거나 양도, 폐차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자동차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

부과기일(매년 4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분의 세금(연액)을 부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 겸 납부서로 5월에 납부합니다.

신규등록시의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는 등록수속때 자동차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서 교부에 대하여**

　자동차세 납부서를 창구에서 교부할 때는 등록번호와 차대번호의 뒤쪽 네자릿수를 확인합니다.

**●2019년 10월에 환경성능할이 새로 도입됩니다!**

자동차취득세의 폐지시기와 자동차세 및 경자동차세의 환경성능할 도입시기가 2017년 4월 1일에서 2019년 10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환경성능할은 자동차를 취득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의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또한 환경성능할의 세율구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의 동향,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증명서(계속검사・구조 등 변경검사용) 교부에 대하여**

* 자동차세 납세확인을 전자화하였습니다!

오사카부는 운수지국과 자동차세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납세확인을 전자화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완납확인이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검시에 자동차세 납세증명서(계속검사, 구조 등 변경검사용)를 제시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는 차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후 운수지국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데는 약 10일정도 걸리므로 그 사이에 차검을 받으실 분은 운수지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부가 발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완납이 확인된 날 차검을 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검 접수 전날까지 완납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납부통지서 등의 송부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인터넷(부세 홈페이지 ‘府税あらかると’)에서 자동차세 납부통지서 등 송부주소 변경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신청 입력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뒤쪽 4자리수)‘가 필요하므로 자동차등록증(차검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검사증의 주소는 운수지국에서 주소변경등록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大阪府　自動車税住所変更届 검색

**자동차 취득세**

■**납세하실 분**

자동차를 취득하신 분이 납세합니다. 단 특수자동차(로드롤러, 블도저 등)와 이륜차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시에 판매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할부판매인 경우)는 해당자동차의 구입자가 취득자로 간주되어 구입자가 납부합니다.

■**납세액**

＝

**세액**

**자동차 취득가격(과세표준액)×세율**

**●자동차의 취득가액**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자동차에 부가하여 하나가 되는 물품(예를 들어 라디오, 스테레오,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의 가격은 포함되나 예비타이어, 시트커버, 매트, 표준공구 등의 부속품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나 연고자에게 싸게 산 경우 등은 통상 거래가격이 취득가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취득가격이 50만엔 이하인 경우는 면세됩니다.

배출가스성능이 좋고 일정한 연비기준을 만족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는 경감조치가 적용됩니다.(상세한 것은 부세 홈페이지 ‘府税あらかると‘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大阪府　自動車取得税　 　검색

**●세율**

영업용 자동차, 경자동차……………２％　　　　　자가용 자동차……………３％

■**납세방법**

자동차 등록 또는 사용신고때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취득세는 2019년 9월 30일에 폐지됩니다.

**경유인취세**

■**납세하실 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납부합니다.

１　특약업자 또는 원매업자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인취하는 분

２　경유에 경유 이외의 것을 혼합하여 제조한 혼화경유를 판매한 분

３　제조한 경유를 소비 또는 양도한 특약업자 및 원매업자 이외의 분

４　자동차의 연료로서 경유 이외의 연료유를 판매 또는 소비한 분

５　경유를 수입한 특약업자 및 원매업자 이외의 분 등

■**납세액**

１㎘당……………（특례세율）32,100엔　（본칙세율）15,000엔

원칙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주)이 3개월 연속 1리터당 160엔을 넘게 되는 경우는 재무대신의 고시를 받아 ‘본칙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후 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이 3개월 연속 1리터당 130엔을 밑돌게 되면 재무대신의 고시를 받아 ‘특례세율‘ 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동일본대지진 복구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 이란 소매물가 통계조사규칙(1982년 총리부령 제6호) 제1조에서 규정한 소매물가 통계조사의 각 월별 결과로 도시별 자동차용 가솔린 소매가격(소비세 포함)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소매가격 통계조사‘ 결과는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용도로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증을

면세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유 판매업자

면세경유사용자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

면세증 제출

면세경유

인취

①면세경유사용자증

교부신청

②면세경유사용자증

교부

③면세증 교부신청

④면세증 교부

교부받으면 면세됩니다.

(1)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에틸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재

(2) 선박, 철도, 궤도용 차량의 동력원

(3) 농업, 입업용기기의 동력원

(4) 전기공급업, 광물 채굴사업, 비계 토공공사업 등

（주）상기(2)∼(4)의 면세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방법**

상기 1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약업자나 원매업자(특별징수의무자)가 경유대금과 합하여 징수하여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기 2∼4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하는 분이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기 5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하는 분이 경유를 수입할 때까지 해당 수입분을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취득세**

■**납세하실 분**

부동산(토지와 가옥)을 매매, 교환, 증여, 신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등기 여부, 유무상, 취득 이유에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가옥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경우나 건축한 가옥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액**

**세액**

**부동산가격(과세표준액)×세율**

＝

과세표준액이란 구입가격이나 건축공사비 등의 가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단 주택이나 택지비준토지(주)의 취득이 2018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의 1/2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주) 택지비준토지란 택지 이외의 토지로, 취득시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해당토지와 상황이 비슷한 택지의 과세표준액에 준거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면세점).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가 옥**

**토 지** 가격이 1호당 23만엔 미만인 경우

가격이 10만엔 미만인 경우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

가격이 1호당 12만엔 미만인 경우

**●세율　４％**(표준세율)

단 특례조치로 취득한 날에 따라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종류  취득일 | 토지 | 가옥 | |
| 주택 | 주택 외 |
| **2008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 **３％** | **３％** | **４％** |

**●경감조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해로 손실된 부동산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방법**

**●신고**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부세사무소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서는 부세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府税　手続き　　　　　검색

**●납세**

부에서 송부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지정된 기일(납기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부동산 취득세 Q&A**

**Q：부모가 사망하여 자식인 제가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되나요?**

A：상속(포괄유증 및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을 포함)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Q：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배우자공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국세)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나요?**

A: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간의 거주용 부동산 증여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과세됩니다.

**오사카부의 고정자산세**

■**납세하실 분**

부과기일(매년 1월 1일)현재 대규모 상각자산(주1)으로 그 가격이 시정촌의 과세한도액(주2)을 넘는 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 등이 납부합니다.

(주１)　하나의 시정촌에 소재하는 납세의무자의 상각자산으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과세정액(시정촌의 인구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주２)　시정촌에 과세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정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정촌의 재정사정에 따라 과세정액을 증액하는 특례가 있으며, 이 경우 한도액은 증액 후의 금액이 됩니다.

■**납세액**

**세액**

**시정촌의 과세한도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세액**

※　시정촌의 과세한도액까지의 금액은 시정촌이 과세합니다.

＝

**●세율**1.4％

■**납세방법**

●**신고**

매년 1월 31일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납세**

부에서 송부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4월, 7월, 12월, 2월로 연 4회로 나누에 납부합니다.

※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납기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과 세금

**지방소비세**

■**납세하실 분**

|  |  |
| --- | --- |
| **구분** | **납세하실 분** |
| 양도할 | 과세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 화물할 | 과세자산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개인 및 법인 |

소비세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나 역무 제공 등의 국내거래와 외국화물 인수에도 과세되며 국내거래에 부과되는 것을 ‘양도할’ 외국화물의 인수에 부과되는 것을 ‘화물할’이라 하여 다음 분이 납부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내의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세금분은 가격에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액**

**세액**

**소비세액(과세표준액)×세율**

＝

**●세율**

|  |  |  |
| --- | --- | --- |
| 적용기간 | 2014년 4월 1일부터 | 2019년 10월 1일부터 |
| 지방소비세율 | 1.7％  （소비세액의 63분의 17） | 2.2％  （소비세액의 78분의 22） |
| 소비세율 | 6.3％ | 7.8％ |
| 합계 | ８％ | 10％ |

■**납세방법**

‘양도할’은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화물할’은 관할 세관에 소비세와 함께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나라에서 세무서나 보세지역이 있는 도도부현으로 지불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급속히 진행되는 소자고령화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와 함께 사회보장 담당하는 지방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수입은 사회보장 4 경비(주) 기타 사회보장시책(사회복지, 사회보험 및 보건위생에 관한 시책을 말합니다.)에 충당합니다.

(주)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급부 및 소자화 시책에 드는 경비

**담배세(부세, 국세, 시정촌세)**

■**납세하실 분**

도매업자 등(일본담배산업(주), 담배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이 부내의 소매업자 등에게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납부합니다.

■**납세액**

**판매한 제조담배의 개비 수(과세표준)×세율**

＝

**세액**

【제조담배(궐련담배 3급품을 제외)에 부과되는 세율】

|  |  |  |  |
| --- | --- | --- | --- |
| **구분** | **세목** | **세율**  **(1,000개비 당)** |  |
| 부세 | 부담배세 | 860엔 |
| 국세 | 담배세 | 5,302엔 |
| 담배특별세 | 820엔 |
| 시정촌세 | 시정촌담배세 | 5,262엔 |

【궐련담배 3급품에 부과되는 세율】

|  |  |  |  |  |
| --- | --- | --- | --- | --- |
| **구분** | **세목** | **세율(1,000개비 당)** | | |
| **현행** | **2018년4월1일∼** | **2019년4월1일∼** |
| 부세 | 부담배세 | 551엔 | 656엔 | 860엔 |
| 국세 | 담배세 | 3,383엔 | 4,032엔 | 5,302엔 |
| 담배특별세 | 523엔 | 624엔 | 820엔 |
| 시정촌세 | 시정촌담배세 | 3,355엔 | 4,000엔 | 5,262엔 |

※　 ‘궐련담배 3급품’은 상기와 같이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　 ‘궐련담배 3급품’이란 다음의 6품명입니다.

와카바, 에코, 신세이, 골든뱃, 우루마, 바이올렛

■**납세방법**

도매업자 등이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담배 1갑에 포함되는 세금(1갑 20개비들이 440엔 담배의 경우)



담배특별세(국세)

16.40엔

소비세(국세)

25.67엔

시정촌 담배세

105.24엔

세외 가격

162.53엔

지방소비세

　6.92엔

담배세(국세)

106.04엔

부담배세

17.20엔

**골프장 이용세**

■**납세하실 분**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납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１　18세 미만인 분

２　70세 이사인 분

３　신체장애자수첩 등을 교부받은 분

４　국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국민체육대회 경기로 골프를 하는 경우

５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제외)의 학생 또는 아동, 인솔하는 교원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　단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이용자가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단기대학 포함) 및 고등전문학교를 말합니다.

■**납세액**

**●세율**

이용요금, 홀 등을 기준으로 한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  |
| --- | --- |
| **등급** | **세 율** |
| １급 | １인 １일에 1,200엔 |
| ２급 | 〃　　　　1,150엔 |
| ３급 | 〃　　　　1,000엔 |
| ４급 | 〃　　　　 800엔 |
| ５급 | 〃　　　　 650엔 |
| ６급 | 〃　　　　 450엔 |
| ７급 | 〃　　　　 350엔 |

■**납세방법**

골프장 경영자(특별징수 의무자)가 이용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수렵세**

■**납세하실 분**

‘조수의 보호 및 관리,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자 등록을 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수렵세는 목적세로 수입은 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시책에 충당합니다.

■**납세액**

|  |  |  |
| --- | --- | --- |
| **면허의 종류** | **종 별** | **세 율** |
| 제 1 종 총사냥  (주1) | ①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하는 분  ②　①의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 16,500엔 |
| ③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  ④　③의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⑤　②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 11,000엔 |
| 그물사냥  또는  올가미사냥 | ⑥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하는 분  ⑦　⑥의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 8,200엔 |
| ⑧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  ⑨　⑧의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⑩　⑦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 5,500엔 |
| 제 2 종 총사냥  (주2) |  | 5,500엔 |

(주1) 제1종 총사냥…장약총

(주2) 제2종 총사냥…공기총

※　제1종 총사냥면허 등록을 받은 분이 공기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　다음 분이 수렵자 등록을 받는 경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렵세가 경감됩니다.

　　　　　・　대상조수포획원, 인정 조수포획 등 사업자의 종사자…면세

　　　　　・　수렵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이전의 1년 이내에 허가포획 등을 한 분…상기 세율의 2분의 1

**■납세방법**

수렵자 등록을 받을 때 부가 발행하는 수렵세증지를 수렵자등록신청서에 부착하여 납부합니다.

**이자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이자할**

■**납세하실 분**

이자 등을 받는 분(개인)이 부내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주)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이자 등에 대해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납세액**

**세액**

**지불 받을 이자 등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

다음 이자 등은 비과세됩니다.

**●지불 받을 이자 등**

|  |  |  |
| --- | --- | --- |
| 장애자, 유족연금 등을 받는 과부 등의 비과세 이자 등 | | |
| ・소액예금 비과세제도  ・소액공채 비과세제도 | | 원금이 각 350만엔 이하 |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비과세제도 이자 등 | | |
| ・재산형성 주택저축  ・재산형성 연금저축 | 원금이 각 550만엔 이하 | |
| 비거주자 | | |
| 기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등 | | |

1.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저축금 등의 이자
2. 특별공사채(주1) 이외의 공사채 이자
3. 금융유사상품(정기적금, 저당증권, 일시불 양로(손해)보험 등의 이자, 차익 등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받을 특정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민세 이자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민세 배당할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주1） ‘특정공사채 등’이란 ‘특정공사채’(국채, 지방채, 외국국체, 외국 지방채, 공모공사채, 상장공사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공사채(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제외) 등의 일정한 공사채), ‘공모공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증권투자신탁 이외의 공모투자신탁 수익권’및 ‘특정목적신탁(사채적 수익권이 공모에 한함)의 사채적 수익권’을 말합니다.

**●세율**５％

※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과세됩니다.

**■납세방법**

이자 등의 지불 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특별징수 의무자)이이자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이자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이자할)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특정배당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배당할**

■**납세하실 분**

특정배당 등을 받는 분(개인)이 특정배당을 지불하는 상장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액**

**지불 받을 특정배당 등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세액**

**지불 받을 특정배당 등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세액**

＝

**●지불 받을 특정배당 등**

①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②투자신탁에서 설정한 수익권의 모집이 공모로 결정된 것의 수익배분

③특정투자법인의 투자몫의 배당 등

④특정목적신탁의 사채적 수익권 잉여금 배당 중 공모된 것

⑤특정공사채의 이자

⑥특정계좌 외의 할인채 상환금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받을 특정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민세 이자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민세 배당할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인채 상환금(특정계좌에 지불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그 할인채를 상환할 때 상환금의 차익금액에 대하여 부민세 배당할이 과세됩니다.

**●세율**５％

※　이와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과세됩니다.

■**납세방법**

특정배당 등을 지불하는 상장기업 등(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정배당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배당 등에 과세되는 부민세(부민세 배당할)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단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선택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업자 등(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정배당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배당 등에 과세되는 부민세(부민세 배당할)을 징수하여 1년분을 모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

**■납세하실 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받는 개인이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하는 증권업자 등의 본사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액**

**지불받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액)×세율**

**세액**

**세액**

**지불받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액)×세율**

＝

**●지불받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①원친징수 선택계좌 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 대가

②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에서 처리된 상장주식 등의 신용거래 등에 드는 차금결재 차익

**●세율　5%**

※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부과됩니다.

■**납세방법**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하는 증권업자 등(특별징수의무자)가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 부민세(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을 징수하여 1년분을 모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숙박세**

오사카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오사카부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법정외 목적세로 숙박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숙소(주1) 및 특구민박(주2)에 대해서는 새로이 2017년 7월(예정)부터 과세대상 시설에 추가됩니다.

(주1) 여관업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동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간이숙소 시설

(주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한 인정사업 시설

■**납세하실 분**

부내의 호텔, 여관 등에 숙박하는 분이 납부합니다.

|  |  |
| --- | --- |
| **숙박요금(주3) (1인 1박)** | **세율** |
| 10,000엔 이상15,000엔 미만 | 100엔 |
| 15,000엔 이상20,000엔 미만 | 200엔 |
| 20,000엔 이상 | 300엔 |

**■납세액**



**세율**

**세액**

**숙박일수**



(주３) 식사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숙박에 한정한 요금과 숙박에 한정한 요금에 대한 서비스료를 말합니다.

※숙박요금이 1인 10,000 미만의 숙박은 면세됩니다.

**■납세방법**

호텔, 여관, 간이숙소 및 특구민박 경영자(특별징수의무자)가 숙박자로부터 숙박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말에 전월분을 정리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電子申告

* 法人都道府県民税・法人事業税・地方法人特別税
* 法人市民税・固定資産税（償却資産）・事業所税
* 特別徴収にかかる給与支払報告書等の提出

電子申請・届出

* 法人設立／設置届出書
* 異動届
* 申告書の提出期限の延長の処分等の届出書・承認申請書
* 申告書の提出期限の延長の取りやめ等の届出書

電子納税

* 本税の納付
* 見込納付



재무부 세무국 세정과　2017년 6월 발행

（부세 홈페이지　　府税あらかると　　　검색　　　）

〒559-8555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14-16 오사카부 사키시마청사(사키시마 코스모타워)18층

TEL06-6210-9119／FAX06-6210-9932



오사카부



簡単便利な電子申告・電子納税をご利用ください。

詳細は、eLTAXホームページhttp://www.eltax.jp/をご覧ください。

eLTAXの利用手続については、eLTAX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いただき、不明な点は、eLTAXヘルプデスク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LTAXヘルプデスク　　電話 0570－081459　　　　　　　　◆eLTAXホームページ　　<http://www.eltax.jp/>

※　IP電話やPHSなどをご利用の場合　03－5500－7010（通常通話料金）

※　受付時間　月～金　9：00～17：00（土日祝日、年末年始を除く）

eLTAXの利用手続については、eLTAX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いただき、不明な点は、eLTAXヘルプデスク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LTAXヘルプデスク　　電話 0570－081459　　　　　　　　◆eLTAXホームページ　　<http://www.eltax.jp/>

※　IP電話やPHSなどをご利用の場合　03－5500－7010（通常通話料金）

※　受付時間　月～金　9：00～17：00（土日祝日、年末年始を除く）